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9일, 김태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
결(수정가결)

제8차 전체회의(2025. 11.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근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안 부칙).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u> <u>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 <u>이</u>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제11조제1항 중 “이용한 기후”를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기후”를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생략)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기후전망: <u>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 ⑤ (생략) 제11조(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u>다음 각 목의</u> ----- - <u>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u> <u>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u> <u>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운영) ① - ----- ----- -----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 시스템 기후모델을 <u>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u>따른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 -----<u>이용한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u>----- ----- -----<u>운영하여야 한다.</u> ② -----<u>따른 국가기후예측 시스템 등 기후</u>----- ----- ----- -----.
--	--